

2021학년도

교육과정 안내



2021. 3. 19.

진안중 학교
(<http://www.jinan.ms.kr/>)

차 례

I. 학교현황	1
II. 2021학년도 교육과정 연간운영계획	2
III.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	4
IV. 2020학년도 학교사업 현황	8
V. 2020학년도 주요 교육활동 실적	9
VI. 2021학년도 주요 교육활동 계획	11
VII. 2021학년도 학부모 연수 자료	12
<1>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12
<2> 3학년 진로진학 안내	13
<3> 봉사활동 안내	16
<4> 평가 계획	17
<5>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18
<6> 교육활동보호와 교원지위법	22
<7>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23
<8>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시작	26
<9> 학생 도박 예방 교육	28
<10> 2021학년도 진안중학교 인성교육 계획	32
<11> Three Strikes Rule(삼진아웃제)	35
<12> Smart Phone Diet	37
<13> 학교 주변은 Student Safe Zone	38
<14> 생명존중 · 자살 예방 교육	39
<15>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43
<16> 양성 평등 교육	44
<17> 흡연 예방 교육	45
<18> 청탁금지법	46
<19> 공교육정상화(선행학습 금지)	48
<20>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	50
<21> 2021학년도 세입 세출 예산	56
<22> 진안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	57
<부록1> 결 석 계	58
<부록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59
<부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60
<부록4>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 및 확인서	61

I . 학교 현황

1. 학교 연혁

년 월 일	내 용
1949.09.09.	진안 중학교 개교
2019.03.01.	제29대 최윤자 교장 부임
2019.03.04.	제71회 졸업식 34명 (총 10,970명)
2021.03.02.	입학식 40명

2. 학생 현황

구 분 \ 학 년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특수학급	계
학 급 수	2	2	2	(1)	6(1)
학 생 수	40	37(2)	49(3)	(5)	126(5)

3.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타	소계	행 정 실				합계	
											실장	주무관	조리	기타		소계
남			2	3	1				1	7		1		1	2	9
여	1	1	1	7		1	1	1	2	15	1		4	2	6	21
계	1	1	3	10	1	1	1	1	3	22	1	1	4	3	9	30

4. 교과별 교사 현황

과목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가	영어	특수	보건	영양	상담	계
남	·	·	1	1	1	1	·	·	·	1	1	·	·	·	6
여	·	2	1	1	·	·	1	1	1	1	·	1	1	1	11
계	·	2	2	2	1	1	1	1	1	2	1	1	1	1	17

II. 2021학년도 교육과정 연간운영계획

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1학기)

연도	주	일	월	화	수	목	금	출석일수		
								일수	누계	월계
3	3	1	1	2	3	4	5	4	4	22
		2	8	9	10	11	12	5	9	
		3	15	16	17	18	19	5	14	
		4	22	23	24	25	26	5	19	
		5	29	30	31			3	22	
4	4	5				1	2	2	24	22
		6	5	6	7	8	9	5	29	
		7	12	13	14	15	16	5	34	
		8	19	20	21	22	23	5	39	
		9	26	27	28	29	30	5	44	
5	5	10	3	4	5	6	7	2	46	17
		11	10	11	12	13	14	5	51	
		12	17	18	19	20	21	4	55	
		13	24	25	26	27	28	5	60	
		14	31					1	61	
6	6	14		1	2	3	4	4	65	22
		15	7	8	9	10	11	5	70	
		16	14	15	16	17	18	5	75	
		17	21	22	23	24	25	5	80	
		18	28	29	30			3	83	
7	7	18				1	2	2	85	12
		19	5	6	7	8	9	5	90	
		20	12	13	14	15	16	5	95	
1학기 소계	1학년	19	20	18	19	19	19	95		
	2학년	19	20	18	19	19	19	95		
	3학년	19	20	18	19	19	19	95		

* 학교 사정(코로나-19, 군청 해외문화탐방, 임시공휴일지정등)에 따라 일부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2학기)

요일 주	월	화	수	목	금	출석일수			
						일수	누계	월계	
8	1	16 여름방학	17 개학	18	19	20	4	4	11
	2	23 자살예방교육(1년)	24	25 교직원교육(학교폭력, 1시간)	26	27	5	9	
	3	30 학교폭력예방학생교육주간 (8.30~9.3) 자살예방교육(2년) 장애인식개선교육(1년)	31 학교폭력예방학생교육주 간				2	11	
9	3		1 학교폭력예방학생교육주간 개별반 통합캠프	2 학교폭력예방학생교육주간	3 학교폭력예방학생교육주간	3	14	17	
	4	6 자살예방교육(3년)	7 영어듣기평가(1년) 119안전체험(2년)	8 영어듣기평가(2년)	9 영어듣기평가(3년)	10	5		19
	5	13 학부모상담주간 (13~17)	14 학부모상담주간	15 교직원심폐소생연수	16 학부모상담주간	17 공개수업	5		24
	6	20 추석연휴	21 추석	22 추석연휴	23 재량휴업	24 재량휴업	0		24
	7	27	28	29	30		4		28
10	7				1	1	29	21	
	8	4	5	6 2학기1차고사 30편전문가.경호원(1년)	7 2학기1차고사 목공, 곤충체험(1년)	8 2학기1차고사 영어체험센터(1년)	5		34
	9	11	12	13 개별반문화체험	14	15 다문화이해교육(3년)	5		39
	10	18 양성평등주간(18~22) 장애인식개선교육(2년) 정보통신윤리교육(1,3년)	19 양성평등주간	20 양성평등주간	21 마이골교육한마당	22 양성평등주간 장애인식개선교육(3년)	5		44
	11	25	26	27	28	29 전기고내신산출 기준일	5		49
11	12	1 현장체험학습(1년) 2,3년 현장체험(해외)	2 스포츠데이(1년) 2,3년 현장체험(해외)	3 2,3년 현장체험(해외)	4 2,3년 현장체험(해외)	5 전기고내신산출완료일 2,3년 현장체험(해외)	5	54	22
	13	8 정보통신윤리교육	9	10 자체소방훈련	11	12	5	59	
	14	15	16	17 개별반문화체험	18	19	5	64	
	15	22	23	24	25	26	5	69	
	16	29 2학기2차고사 목공, 곤충체험(1년)	30 2학기2차고사 아크릴아트체험(1년)				2	71	
12	16			1 2학기2차고사 꿈액자만들기(1년)	2	3	3	74	19
	17	6	7	8	9	10	5	79	
	18	13 후기고내신산출기준일	14	15 후기고내신산출완료일	16	17	5	84	
	19	20 일반고원서교부접수 (20~22)	21	22	23 진술축제	24	5	89	
	20	27 사정회	28 종업식	29 겨울방학	30 겨울방학	31 겨울방학	2	91	
2021 2	21 개학	22 개학	23 개학	24 졸업식 종업식	25 학기말방학	4	95	4	
2 학기 소계	1학년	19	20	19	19	18	95		
	2학년	38	40	37	38	37	190		
	3학년	38	40	37	38	37	190		
총계	1학년	38	40	37	38	37	190		
	2학년	38	40	37	38	37	190		
	3학년	38	40	37	38	37	190		

* 학교 사정(코로나-19, 군청 해외문화탐방, 임시공휴일지정등)에 따라 일부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

2021학년도 전체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군)	국어	68	68	68	51	68	68	68	68	
	사회/ 도덕	사회	51	34	51	51	0	0	34	34
		역사	0	0	0	0	51	51	34	34
		도덕	17	17	17	17	34	34	34	34
	수학	68	68	68	51	68	68	51	51	
	과학/ 기술·가정	과학	51	51	51	34	68	68	68	68
		기술·가정	34	34	34	17	51	51	51	51
		정보	0	0	0	0	17	17	0	0
	체육	51	34	51	51	51	51	34	34	
	예술	음악	34	34	34	17	17	17	17	17
		미술	34	34	34	17	17	17	17	17
	영어	51	34	51	51	51	51	68	68	
	선택	한문	34	34	34	34	0	0	0	0
		중국어	34	34	34	34	0	0	0	0
		환경	0	0	0	0	0	0	0	0
보건		17	17	17	17	17	17	0	0	
진로와직업		0	0	0	0	0	0	0	0	
교과 시수 합계		510	459	510	408	510	510	476	476	
창의 적 체 험 동	자율활동	7	7	5	5	7	5	14	14	
	동아리활동	17	0	17	0	17	17	17	17	
	봉사활동	6	6	4	4	6	4	6	4	
	진로활동	4	4	8	8	4	8	14	16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합계	34	17	34	17	34	34	51	51	
학교 스포 츠 클럽 동	기존창체활동(~68)	17	0	17	0	17	17	0	0	
	창체순증	0	0	0	0	0	0	0	0	
	교과감축	0	0	0	0	0	0	34	34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17	-	17	0	17	17	34	34	
총 수업 시간 수		561	561	561	561	561	561	561	561	
자유 기 동 (교 과 / 창 체)	진로탐색활동	0	17	0	17	8	8	8	8	
	주제선택활동	0	17	0	51	0	0	0	0	
	예술체육활동	0	17	0	34	0	0	0	0	
	동아리활동	0	34	0	34	0	0	0	0	
	자유학기 시수 합계	-	85	-	136	-	-	-	-	

2021학년도 입학생 3개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기준 시수	총괄		1학년					2학년		3학년			
			편성 시수	증감 시수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전환 항목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전환 항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군)	국어	442	408	-34	68	68		68	51	주 17	68	68	68	68	
	사회/ 도덕	사회	510	170		51	34	진 17	51	51				34	34
		역사		170							51	51	34	34	
		도덕		170		17	17		17	17		34	34	34	34
	수학	374	374		68	68		68	51	주 17	68	68	51	51	
	과학/ 기술·가 정보	과학	680	374		51	51		51	34	주 17	68	68	68	68
		기술·가정		272		34	34		34	17	진 17	51	51	51	51
		정보		34								17	17		
	체육	272	272		51	34	예 17	51	51		51	51	34	34	
	예술	음악	272	136		34	34		34	17	예 17	17	17	17	17
		미술		136		34	34		34	17	예 17	17	17	17	17
	영어	340	340		51	34	주 17	51	51		51	51	68	68	
	선택	한문	170	68		34	34		34	34					
		중국어													
환경		0		-34											
보건		68			17	17		17	17		17	17			
진로와직업		0													
소계		3,060	2,992	-68	510	459	51	510	408	102	510	510	476	476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306	52		7	7		5	5		7	5	14	14	
	동아리활동		102	-68	17		동 17	17		동 17	17	17	17	17	
	봉사활동		30		6	6		4	4		6	4	6	4	
	진로활동		54		4	4		8	8		4	8	14	16	
	소계		306	238	-68	34	15	15	34	17	17	34	34	51	51
학교포 츠 클럽등 활동	창체활동(~68)	136	68	68	17		동 17	17		동 17	17	17			
	창체순증														
	교과감축		68	68									34	34	
	소계		136	136	136	17	0	17	17	0	17	17	17	34	34
총 수업 시간 수		3,366	3,366	0	561	561		561	528		561	561	561	561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8	
자유학기 활동	진로탐색활동	221~	34			17			17						
	주제선택활동		68			17			51						
	예술체육활동		51			17			34						
	동아리활동		68			34			34						
	소계		221~	221	0	0	85		0	136		0	0	0	0

2020학년도 입학생 3개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기준 시수	총괄		1학년						2학년		3학년		
			편성 시수	증감 시수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전환 항목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전환 항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권)	국어	442	408	-34	68	60		68	48	주 16	68	68	68	68	
	사회/ 도덕	사회	510	170		51	30	진 15	51	48				34	34
		역사		170							51	51	34	34	
		도덕		170		17	15		17	16		34	34	34	34
	수학	374	374		68	60		68	48	주 16	68	68	51	51	
	과학/ 기술·가 정	과학	680	374		51	45		51	32	주 16	68	68	68	68
		기술·가정		272		34	15	진 15	34	32		51	51	51	51
		정보		34								17	17		
	체육	272	272		51	30	예 15	51	48		51	51	34	34	
	예술	음악	272	136		34	30		34	16	예 16	17	17	17	17
		미술		136		34	30		34	16	예 16	17	17	17	17
	영어	340	340		51	45		51	32	주 16	51	51	68	68	
	선택	한문	170	68	-34	34	30		34	32					
		중국어													
환경		0													
보건		68				17	15		17	16		17	17		
진로와직업		0													
소계	3,060	2,992	-68	510	405	45	510	384	96	510	510	476	476		
창의 적 체 험 동	자율활동	306	52	-68	7	5		5	5		7	5	14	14	
	동아리활동		102				동 15	17		동 16	17	17	17	17	
	봉사활동		30			6	5		4	4		6	4	6	4
	진로활동		54			4	5		8	7		4	8	14	16
	소계		306		238	-68	34	15	15	34	16	16	34	34	51
학교 스포 츠 클럽 동	창체활동(~68)	136	68	68	17		동 15	17		동 16	17	17			
	창체순증		0	0											
	교과감축		68	68									34	34	
	소계		136	136	136	17	0	15	17	0	16	17	17	34	34
총 수업 시간 수		3,366	3,366	0	561	495		561	528		561	561	561	561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8	
자 유 학 기 활 동	진로탐색활동	170 ~	30			30			0						
	주제선택활동		64			0			64						
	예술체육활동		47			15			32						
	동아리활동		62			30			32						
	소계		170~	203	0	0	75		0	128		0	0	0	0

2019학년도 입학생 3개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기준 시수	총괄		1학년						2학년		3학년		
			편성 시수	증감 시수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전환 항목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전환 항목	1학 기	2학 기	1학 기	2학 기	
교과(군)	국어	442	396	-46	68	68		68	51	주17	60	64	68	68	
	사회/ 도덕	사회	510	170	-15	51	34	진17	51	51				34	34
		역사		161							45	48	34	34	
		도덕		164		17	17		17	17		30	32	34	34
	수학	374	362	-12	68	68		68	51	주17	60	64	51	51	
	과학/ 기술·가 정보	과학	680	362	-24	51	51		51	34	주17	60	64	68	68
		기술·가정		263		34	17	진17	34	34		45	48	51	51
		정보		31								15	16		
	체육	272	263	-9	51	34	예17	51	51		45	48	34	34	
	예술	음악	272	133	-6	34	34		34	17	예17	15	16	17	17
		미술		133		34	34		34	17	예17	15	16	17	17
	영어	340	331	-9	51	51		51	34	주17	45	48	68	68	
	선택	한문	170	68	-37	34	34		34	34					
		생활외국어		0											
환경		0													
보건		48					17	17		15	16				
진로와직업		17		17		17									
소계	3,060	2,902	-143	510	459	51	510	408	102	450	480	476	476		
창의 체험 활동	자율활동	306	51	-74	7	7		5	5		6	5	14	14	
	동아리활동		99		17		동17	17		동17	15	16	17	17	
	봉사활동		29		6	6		4	4		5	4	6	4	
	진로활동		53		4	4		8	8		4	7	14	16	
	소계		306		232	-74	34	17	17	34	17	17	30	32	51
학교 포스트 클럽 활동	창체활동(~68)	136	65	65	17		동17	17		동17	15	16			
	창체순증		0	0											
	교과감축		68	68									34	34	
	소계		136	133	133	17	0	-	17	0	-	15	16	34	34
총 수업 시간 수		3,366	3,267	-84	561	561		561	561		495	528	561	561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8	
자 유 과 목 기 타 활 동	진로탐색활동	170 ~	34			34			0						
	주제선택활동		68			0			68						
	예술체육활동		51			17			34						
	동아리활동		68			34			34						
	소계		170~	221	0	0	85		0	136		0	0	0	0

Ⅳ . 2020학 년 도 학 교 사 업 현 황

1. 환경 개선사업 주요 실적

- 다목적교실 신축(2층, 566.32㎡, 진안교육지원청 지원): 1,035,389,740원
- 본관동 2층 복도 및 컴퓨터실 등기구 교체공사(진안교육지원청 지원): 4,792,000원
- 식생활관 주변 펜스 및 과학실 환풍기 설치공사(진안교육지원청 지원): 3,906,000원
- 본관동 및 후관동 방범설비 설치(진안교육지원청 지원): 660,000원
- 본관동 외벽 및 창호 방수 및 기타공사(진안교육지원청 지원): 8,816,960원
- 학생용 책걸상 구입(책상 66개, 걸상 20개, 학교구입): 4,331,260원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노트북외 3종, 학교구입): 19,054,200원
- 강당 무대 경사로 설치(학교구입): 4,500,000원
-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학교구입): 40,271,290원
- 승용잔디깎기 구입(학교구입): 9,680,000원
- 보건실 현대화 사업(학교집행): 19,983,540원
- 냉난방기 및 선풍기 청소(학교집행): 4,646,000원

2. 2020년도 용담댐 주변지역 육영사업 지원내역

- 비디오프로젝터 1대 지원: 3,245,000원
- 레이저프린터복합기 2대 지원: 651,400원
- 레이저칼라프린터 2대 지원: 2,805,000원
- 전자레인지 2대 지원: 309,000원
- 교실 청소기 6대 지원: 2,600,000원

V. 2020학년도 주요교육활동 실적

1. 2020학년도 진학 현황

구분 졸업 생수	진학 내용									
	일반계(21)					특성화고(13)				
	진안 제일	전주	마령	안천	기타	진안 공고	한국전 통고	한방 고	전북 체고	타지역 특성화고
34명	12	7	2	0	0	4	1	2	1	5
비율(%)	35%	20%	5%	0%	0%	11%	3%	5%	2%	14%

2. 교육활동 실적

구분	활동 내용	대상 학년
인성교육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체계 구축: 학부모 상담주간 -진솔위크북을 활용한 학교적응활동 -학년별 교과융합수업 -방과후 활동을 통한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교사/학생 인성교육 실시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교축제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학생회 전학년
시책사업 운영 및 교육활동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운영 1) 기초부진아 수업(국,영,수,3R) : 학년별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1)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10개 부서 운영 2)학기중 으뜸인재 맞춤형 심화수업 6개반 운영(월,화,목) -슬로우 리딩: 한 학기 한 권씩 -영어체험학습 -특수학급 사회적응훈련, 진로지도체험 및 방과후활동 -자율동아리 3개 부서 운영 -열린 과학 체험 -2020년 교육단계별 교육지원 2개 사업 운영	대상학생(20명) 전학년 3학년 전학년 2학년 특수학급 대상학생(75명) 1학년 전학년
진로교육	-목공체험활동, 문화의 숲 체험 -진안마이골 한마당 참여	1학년 전학년

구분	활동 내용	대상 학년
	-3D 및 로봇 체험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교실 -진로직업 특강 -천연 염색, 다육식재, 도자기공예, 치즈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토종생태 텃밭 가꾸기	전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119 안전체험 -지진 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전 교과 연계 안전지도 -자살예방교육	2학년 전학년
보건교육	-건강검진 추진 -소변검사, 시력검사 -공공기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생 및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1학년 2,3학년 교직원 전교생 전교생 전교생,교직원
현장체험학습	-진로현장체험학습	전학년
체육문화예술 활동	-학생자치회 주관 스포츠데이 및 진솔축제 운영 -제 45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참가 -논술 개그 공연 -창작극회 연극공연 -찾아가는 마술공연	전학년 대상학생 전학년 1, 3학년 전학년
캠프활동	-남원학생수련원 진로캠프 -진로비전캠프	1학년(36명) 3학년
상담복지활동	-또래 상담반 운영 -표준화검사 실시 -표준화검사 해석 상담실시 -다문화 교육 -자살예방교육 -교육복지 학생 대상 건강지원 및 청소년 북토크 도서지원 -정서행동 발달검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논술 개그 공연 -교우관계 개선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용담댐 장학금 지급	전교생 전교생 1학년 전교생 전교생 대상 학생 1학년 전교생 2학년 해당학생

Ⅵ . 2021학년도 주요 교육활동 계획

주요정책	추진 과제	세부 사업
1.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1.1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1.1.1 학교 상담활동의 활성화
		1.1.2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1.1.3 학생 7대 안전교육 지도를 통한 행복한 학교생활
		1.1.4 학생건강증진 운영 내실화(보건, 성교육)
		1.1.5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1.2 진로·직업체험 교육의 내실화	1.2.1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
		1.2.2 꿈을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실시
		1.2.3 미래를 위한 한 걸음, 대학탐방
	1.3.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정착	1.3.1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 행사 운영
1.3.2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자율동아리		
2.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2.1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	2.1.1 학교 참학력 신장 추진
		2.1.2 맞춤형 책임교육 실시
	2.2 교권 존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2.2.1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실시
		2.2.2 인권이 신장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2.2.3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3.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3.1 학부모 부담 최소화	3.1.1 저소득층 자녀 지원
		3.1.2 학교급식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3.2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3.2.1 학부모 동아리 운영
		3.2.2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4.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4.1 차별 없는 교육실현	4.1.1 다문화 및 조손가정 자녀 지원 교육
		4.1.2 더디지만 함께 가는 특수교육
	4.2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행정 구현	4.2.1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및 실천
		4.2.2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합리적 운영
		4.2.3 학교 재정 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5.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5.1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5.1.1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 협력 강화

Ⅶ . 2021학년도 학부모 연수 자료

<1>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1 자유학기제 시간표 운영 모형

1학기 (85시간)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1		기본 교과(28시간), 자유학기 활동수업(5시간)			예술체육	
2		○ 교육과정 : 핵심 성취 기준 기반 수업				
3		○ 수업방법				
4		-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실습, 체험 등				
5		- 수업 및 활동 내용에 따라 탄력적 블록타임제			진로탐색	
6			동아리			
7			동아리 (스쿨)			

2학기 (136시간)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1		기본 교과(25시간), 자유학기 활동수업(8시간)				
2		○ 교육과정 : 핵심 성취 기준 기반 수업				
3		○ 수업방법				
4		-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실습, 체험 등				
5		- 수업 및 활동 내용에 따라 탄력적 블록타임제				
6		예술체육	동아리		주제선택	주제선택
7		예술체육	동아리 (스쿨)		진로탐색	주제선택

2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안내

1학기		2학기	
주제탐구	협동학습, 영어로 통한다 (교양영어)	주제탐구	수학으로 만드는 세상 과학아 놀자 인문독서
진로탐색	꿈을 찾는 진로 나침반	진로탐색	나도 발명가
예술체육	플로어 컬링	예술체육	다양한 공예 표현 알기 우쿠렐라 배우기
동아리활동	도서반 영화감상반 드론축구반 또래학습반 탁구반 축구반 농구반	동아리활동	도서반 영화감상반 드론축구반 또래학습반 탁구반 축구반 농구반

3 고사 기간 활동 계획

구분	일자	활동 내용	비고
1학기	1차 고사	4월 26일	환경지킴이체험(환경을 생각하는 천연 모기약 만들기)
		4월 27일	진안고원자연학습장(목공, 자연색깔요리체험)
		4월 28일	진안고원자연학습장(목공, 자연색깔요리체험)
	2차 고사	6월 30일	발명메이커교육
		7월 1일	발명메이커교육
		7월 2일	군청 공무원 체험
2학기	1차 고사	10월 6일	나의 진로 탐색하기
		10월 7일	진안고원자연학습장(목공, 곤충체험)
		10월 8일	영어체험
	2차 고사	11월 29일	진안고원자연학습장(목공, 곤충체험)
		11월 30일	아크릴 아트 체험
		12월 1일	진로체험

* 자유학기(년)제 운영 계획은 교육과정과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3학년 진로진학 안내

가. 2022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표

구분 학교유형 전형일정	전기고				후기고		
	특수목적고(4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총 4교]	특수목적고(3교) 특성화고(전문24교, 대안4교) 일반고(전문4교, 예체4교) [총 39교]		특수목적고(1교) 자율형 사립고(1교) [총 2교]	비평준화 일반고 (54교)	평준화 일반고 (38교)	
내신산출기준일	'21.9.30.(목)		'21.10.29.(금)		'21.12.13.(월)		
내신산출완료일	'21.10.11.(월)		'21.11.5.(금)		'21.12.15.(수)		
원서교부·접수	'21.10.18.(월)-10.22.(금) 17:00까지	특 수 목 적 고 (전 원 계 열)	'21.11.12.(금)- 11.15.(월) 17:00까지	일 반 고 (전 원 계 열)	'21.11.18.(목) - 11.22.(월) 17:00까지	상산고: 2021.12.6.(월)~12.9.(목) 외고: 2021.12.15.(수)~12.17.(금) 일반고: 2021.12.20.(월)-12.22.(수)	
전형기간 (전형일)	'21.10.27.(수)-10.29.(금)		'21.11.16.(화)		'21.11.23.(화) - 11.25.(목)	자기주도학습 전형일 12.6.(월)~1.3.(월)	
합격자 발표	'21.11.2.(화) 10:00		'21.11.17.(수) 10:00		'21.11.26.(금) 10:00	'22.1.3.(월) 10:00	'22.1.7.(금) 10:00
학교배정발표						'22.1.14.(금) 14:00	
등록기간	2022.1.17.(월)-1.20.(목) 17:00까지 [전·후기고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추가 모 집	원서접수	2022.2.3.(목) - 2.4.(금) 17:00					
	전형일	2022.2.7.(월) - 2.8.(화)					
	합격자발표	2022.2.9.(수) 10:00					
	등록기간	2022.2.14.(월) - 2022.2.15.(화) 17:00					
수시 추가	원서접수	2022.2.21.(월) - 2022.5.27.(금)					
	전형 및 등록기간	수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기간 내 수시 (다만, 입학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의 전형은 8월부터 / * 평준화 일반고 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 없음						
전형군별 학교명단	특수목적고(4) (산업수요 맞춤형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3) 전북과학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특성화고(28) -전문계열(24교) 전주생명과학고, 전주공고, 전주삼일정보고, 완 산여고, 군산상고, 군산여상고, 이리공고, 진경여고, 정읍제일고, 칠보고, 학산고, 남원용성고, 남원제일 고, 덕암정보고, 전북하이텍고, 한국게임과학고, 한국한방고, 진안공고, 전북유니텍고, 오수고, 한 국치즈과학고, 강호항공고, 부안제일고, 줄포자 동차공고 -대안계열(4) 고산고, 세인고, 푸른공고, 지평선고 일반고 전문계(4) 한국전통문화고, 원광정보예술고, 함열여고, 영선고 일반고 예체계(4) 한국전통문화고, 원광정보예술고,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 ※ 밑줄 : 2개 전형 실시 교고	특수목적고(1) 전북외고 자율형 사립고(1) , 상산고 ※ 상산고(전국단위) 별도 전형일정(예정) 2021.12.6.(월) ~ 2022.1.3.(월)까지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예정임	0 평준화고(38) 전주(23교):전북사대부고, 양현고, 전라고,전주고,전주솔내고,전주여 고,전주제일고,동양고,완산고,우석 고,유일여고,전북여고,전일고,전주 군영여고,전주기전여고,전주사대 부고,전주성심여고,전주영생고,전 주신흥고,전주중앙여고,전주한일 고,전주해성고,호남제일고 군산(7교):군산고,군산여고,군산동 고,군산제일고,군산영광여고,군산중 양고,군산중앙여고 익산(8교):이리고,이리여고,남성 고,원광고,원광여고,이리남성여고, 이일여고,전북제일고 0 비평준화고(54) 군산(1교):한들고 익산(5교):성일고,익산고,야산고,함열고, 함열여고 정읍(10교):배정고,서양여고,산태인고, 왕산여고,인상고,정읍고,정읍여고,정읍제 일고,정주고,칠보고,태인고,학산고,호남고 남원(5교):남원고,남원여고,남원서진 여고,성원고,인월고 김제(7교):김제고,김제서고,김제여 고,금산고,덕암고,만경고,만경여고 완주(2교):완주고,한별고 진안(3교):마령고,안천고, 진안제일고 무주(4교):무주고,설천고,무풍고, 안성고 장수(3교):백화여고,산서고,장수고 임실(1교):임실고 순창(3교):순창제일고,동계고, 순창고 고창(5교):고창고,고창북고, 고창여고,영선고,해리고 부안(5교):백산고,서림고,부안고,부안 여고,위도고			
전형138(133교)	4교	39교(중복 2교 포함)		2교	92교(중복 2교 포함)		

나. 2021학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1) 내신 성적 산출 적용 범위

구분	전형	원서접수	내신산출 기준일	내신반영
전기고	마이스터고	2021.10.18.(월)~22.(금)	2021.09.30.(목)	3학년 1학기까지
	특별전형	2021.11.12.(금)~15.(월)	2021.10.29.(금)	3학년 2학기 1차 지필 고사까지
	일반전형	2021.11.18.(목)~22.(월)		
후기고	상산고	2021.12.06.(월)~09.(목)	2021.12.13.(월)	3학년 2학기 지필고사 (1, 2차) +수행평가
	외고, 자사고	2021.12.15.(수)~17.(금)		
	일반고	2021.12.20.(월)~22.(수)		

※ 위의 고입전형 일정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내신성적 반영 항목 및 비율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교과	일반교과	1-2학년	90점	30%
		3학년	90점	30%
	체육·예술교과	전학년	60점	20%
	소계		240점	80%
비교과	출결상황		30점	10%
	봉사활동상황		15점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15점	5%
	소계		60점	20%
총계			300점	100%

※ 자유학기 및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성적이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수행평가 제외)

※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 2차 지필고사+수행평가

(가) 교과성적 산출

교과 성적 산출 공식

구분	학년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일반 교과	1-2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3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소계		180
체육·예술 교과	전학년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12$	60
합계			240

※ 이수과목이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과목을 말함.

※ 교과의 성취도 환산점수 :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 졸업생의 경우, 세부 시행 지침(3./ 마./ 2./)에 따라 적용하되, 부득이 본 산출공식에 따라 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 우수(체육·예술교과) : A
- 우, 보통(체육·예술교과) : B
- 미, 미흡(체육·예술교과) : C
- 양 : D
- 가 : E

(나) 출결상황 : 병결 및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미인정결석은 감점
결석일수에 따른 출석점수는 학년별 4~10점으로 산출하며, 1, 2, 3학년 출석점수를 합산하여 총 30점 만점을 적용한다.(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미인정(무단)결석1일로 계산)

※ 학년별 출결상황 내신점수 산출표

결석 일 수	출석 점 수	비 고
0일	10 점	
1 ~ 3일	9 점	
4 ~ 7일	8 점	
8 ~ 11일	7 점	
12 ~ 15일	6 점	
16 ~ 19일	5 점	
20일 이상	4 점	

※ 지각: 1교시 시작 전(8:40)까지 등교하지 않을 때.
조퇴: 조퇴: 학급 종례 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10분이상을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병원에 진료 등으로 늦은 경우는 병지각, 병결과에 해당)

(다) 봉사활동

봉사활동상황 점수는 총 15점이며, 부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 2)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

시간	30시간 이상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학년 당5점 만점(기본3점)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모범상, 표창장(모범), 표창장(선행)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점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반장, 부반장, 학생회 회장, 학생회 부회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유공 항목별 0.5점 및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장애인 인식 개선 방송수기 및 백일장 행사 수상자-2017학년 수상자부터 적용)	
3	동아리 활동	유공자	동아리활동반(동아리, 스포츠클럽,)반장, 부반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우수자 표창항목별 0.5점
4	기타 학교활동우수자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우수자(통계활용행사우수자-2017학년 수상자부터 적용)	
5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3학년 2학기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 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

<3> 봉사활동 안내

1. 학생봉사활동 운영

- (1) 학생봉사활동의 연간 이수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상의 시간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30시간** 이상 실시
- (2) 교육과정상의 봉사활동시간은 **10시간** 편성하여 운영
- (3) **봉사활동 실시 전에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교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함.**
- (4)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2. 학생봉사활동 안내

- 단체 봉사 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상의 봉사활동 10시간(학교에서 활동)
- 개인 봉사 활동 :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학생들 스스로 찾아서 활동)
-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
⇒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안함)

(1)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1시간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2)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4> 평 가 계 획

1. 교내 정기고사 평가 실시 예정일

고 사	1학기		2학기	
	1차고사	2차고사	1차고사	2차고사
기 간	4월 26일(월) ~ 4월 28일(수)	6월 30일(수) ~ 7월 2일(금)	10월 6일(수) ~ 10월 8일(금)	11월 29일(월) ~ 12월 1일(수)

※ 1학년은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정기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2. 학기별 지필, 수행평가 반영 비율

과목 \ 고사	1학기			2학기		
	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	1차고사	2차고사	수행평가
	지필평가	지필평가		지필평가	지필평가	
국어	30%	30%	40%	30%	30%	40%
수학						
사회, 역사						
과학						
영어						
기술가정						
도덕, 정보	지필평가 미실시	30%	70%	지필평가 미실시	30%	70%
음악, 미술, 체육	지필평가 미실시		100%	지필평가 미실시		100%

3. 교외 고사 평가 실시 예정일

고사 \ 학년	일 정 안 내	학년
영어듣기평가	4.06.(화), 9.7(화)	1학년
	4.08.(목), 9.8(수)	2학년
	4.09.(금), 9.9(목)	3학년

※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5>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I 학교폭력 사안 처리 원칙

☆ 학교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 학교폭력 신고 사항 및 인지 사항은 담임교사 등이 임의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장, 교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게 반드시 알리며, 사소한 것이라도 신고 접수(사안 인지 포함) 사항을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
 - ※ 성폭력 사안은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 지역청 소속학교→ 지역교육청 해당과, 본청 소속학교→본청
2. 사안을 가볍게 여겨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 또는 무마하려 하거나, 사안을 축소·은폐하여 임의로 종결할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됨에 유의함
3. 사안을 인지한 순간부터 종결될 때까지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도록 함
5. 학교장을 포함하여 모든 교직원은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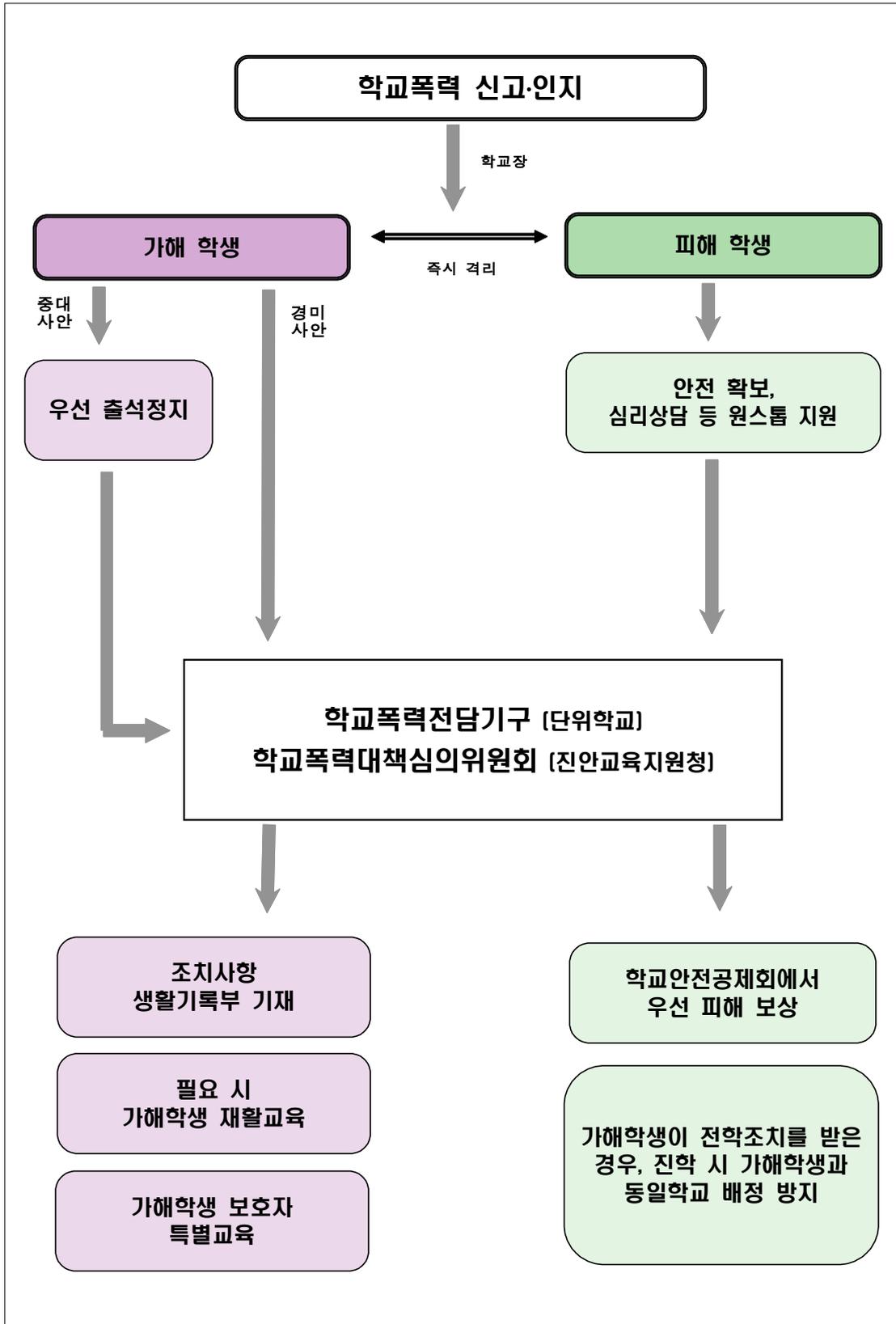
II 학교폭력 사안 처리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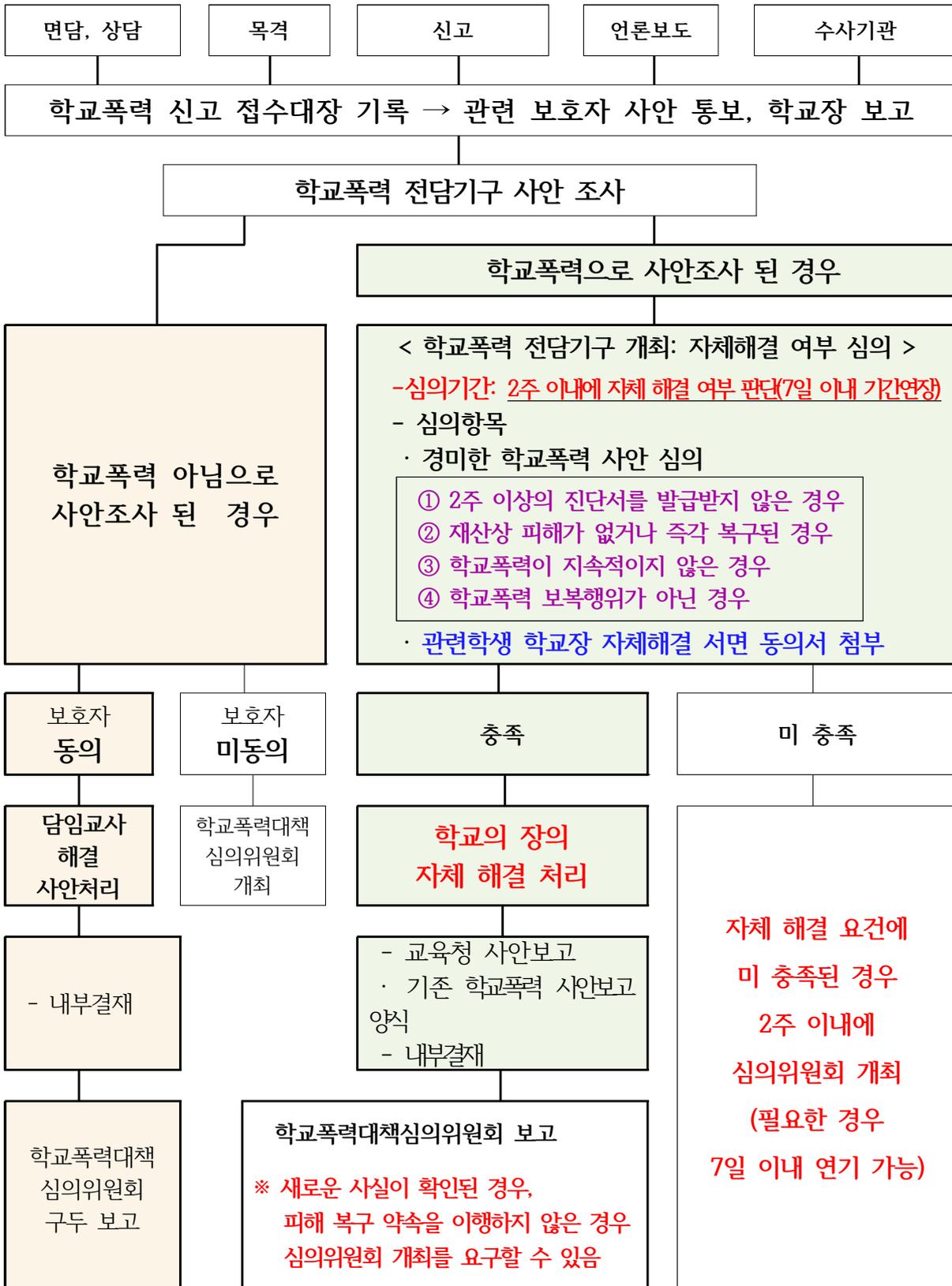
1. 담임교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안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2. 일반적인 절차 거쳐야 하는 사안 및 중대 사안 (학교폭력 전담기구 보고 및 생활지도부 접수 포함)

-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 사항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 사안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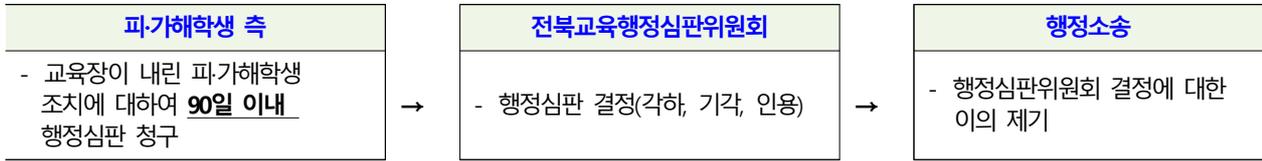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처리 과정

교육장이 내린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전라북도교육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법무팀(063-239-3547)



※ 피·가해학생 측은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교폭력 외 학교생활 조치 불복 (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 전학 및 퇴학 조치에 대한 불복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그 외 조치에 대한 불복 → 공립(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사립(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생활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 1호 학교 내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특별교육
- 4호 출석정지
- 5호 퇴학처분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지위법)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

※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퇴학 조치를 내린 경우 :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 재심청구기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조치를 받은 날: 도달주의에 따라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청구
- 대상: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학생
- 집행정지: 재심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결정 통보일까지 자동 유보
- 담당부서: 교권보호위원회(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09)
학생징계조정위원회(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63-239-3462)

<6> 교육활동보호와 교원지위법

I 교원지위법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약칭해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

II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은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III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행위란?

-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등).

IV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 선생님께서는 우선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과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교원의 교권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7>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I 아동학대(가정폭력)란?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용어 정리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II 아동 학대와 관련한 처벌 근거

■ 처벌 근거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 추행, 명예 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유의사항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광의적 개념’이다.
-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 기관에서의 범죄와는 다를 수 있다.
- 학대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 상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고의무자 교육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

- 신고 의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112, 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 교육내용

- 교육 내용: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 신고요령 등

III 아동학대 사안 신고 절차

●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 112로 즉시 신고하기
 -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의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기
 - 적절한 양육 환경인지 의심되거나, 명 상처가 보이지만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법적인 아동학대 신고 접수기관이므로 상담을 통해 바로 신고 접수 가능함
- 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함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하며,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 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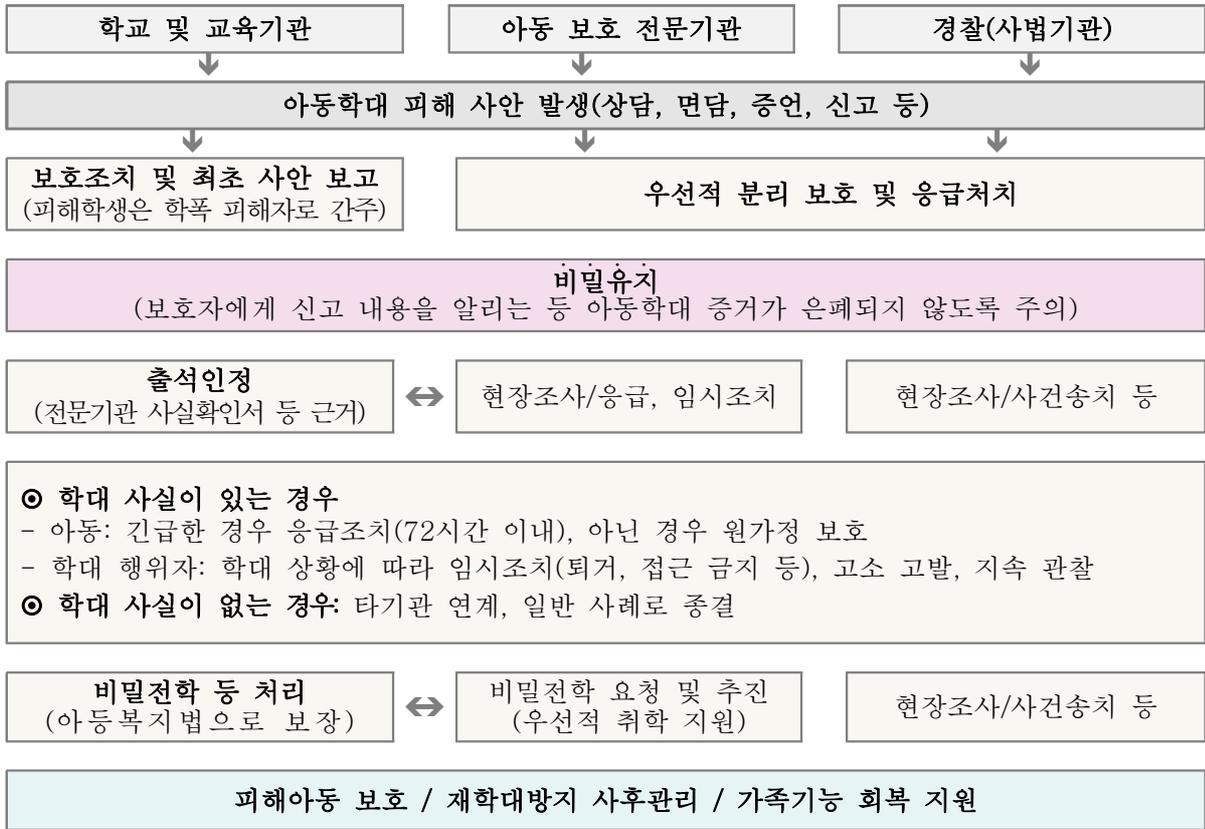
● 신고자 보호 강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 (동법 제62조 제2항) 신고인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 엄수

- 교직원은 피해아동의 신변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비밀엄수의무를 지켜야 함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V 아동학대 사안 처리 흐름도



V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순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기관 대표번호
1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063-283-1391
2	전라북도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남원시 시청로 41	063-635-1391
3	전라북도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익산시 인북로 112	063-852-1391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

관련부처	내용
교육부	교육부(www.moe.go.kr)/뉴스·홍보/홍보마당/홍보동영상/아동학대예방 동영상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정보/교육자료 (인쇄물, 동영상)

<8> 가정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시작

I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수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II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부모 역할

- 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아동기의 가정폭력·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서 아동의 건강, 발달,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세대 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자녀가 가진 능력이나 발달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습득: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체벌과 혼욕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서적 욕구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III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유형과 후유증

구분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유형	가정폭력·아동학대의 후유증
1. 신체적 폭력과 학대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가재도구를 던지고 부수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신체적 상처와 신경계의 손상을 일으킴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함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 함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침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을 높임

구분	가정폭력 . 아동학대의 유형	가정폭력 . 아동학대의 후유증
2. 언어, 정서적 폭력과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학대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학대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행동발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특히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낮은 자아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낮은 학업성취, 도벽 -거짓말, 타인에 대한 공격성
3.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을 보임 -영유아기 심각한 수준의 방임은 신체의 성장과 인지발달에 치명적 손상을 줌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함
4. 성적 폭력과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지 않은 성*위를 강요하는 행위 -성적으로 의심하고 모욕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부적절한 성적 행동, 자아존중감 상실 -성인기에 성학대 피해자, 혹은 학대행위자가 되는 성향이 짙음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다수의 아동과 성인들은 거부, 배신, 공포를 경험함으로써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기도 함

가정폭력 . 성폭력 신고전화 ☎ 112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635-139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자료/가정폭력예방



여성가족부

<9> 학생 도박 예방 교육

I 추진배경

□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472호」(17.11.10)

□ 목적

- 학생 도박 예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의 제시를 통한 학생 도박 예방의 토대 마련
- 학생이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선제적 도박 예방 교육 실시
- 게이тки퍼(교사, 학부모 등)의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내 도박 문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을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필요성

- (언론 보도)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최근 언론보도 >

- ▶ 국내 청소년 14만명 도박 위험군.. 도박에 빠지는 이유 무엇일까? [헬스조선 18. 12. 26]
- ▶ 도박 중독 위험 청소년, 올해 14만 5000명으로 늘어 [서울신문, 18. 12. 26]
- ▶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는 돈, 평균치 10배 넘어 [아시아경제, 18. 12. 25]
- ▶ 청소년 100명 중 6명은 도박문제 위험... 불법 온라인 도박도 기승 [중부일보, 18. 12. 24]
- ▶ “모바일게임, 인형뽑기 중독까지”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 증가추세[천지일보, 18. 12. 24.]
- ▶ 익산지역 청소년 ‘인터넷 불법 도박 성행’ 대책마련 시급 [전북도민일보, 18. 12. 23]
- ▶ 게임에서 도박으로... 위험한 ‘사다리’ [인천일보, 18. 12. 20]
- ▶ 도박 빠져 범죄까지 손대는 청소년.. “사춘기 반항 아닌 질병” [노컷뉴스, 18. 12. 11]
- ▶ ‘한탕주의’ 광주 도박 중독 문제 심각하네 [남도일보, 18. 12. 16]
- ▶ 인터넷 개인방송서 ‘불법 도박 홍보’ 연령제한도 없었다[헤럴드경제, 18. 12. 10]
- ▶ 청소년 도박의 중심에 스마트폰 있어.. 수천만원 날리기도[YTN, 18. 12. 11.]
- ▶ 스마트폰 타고 유행처럼 번지는 청소년 불법도박 [매일신문, 18. 12. 11.]

- (학교폭력 심화) 학생 간 서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사채놀이를 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게 되어 학교폭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전라북도의회)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17.11.10.) 제정 등 본격적 대응

II 문제점

□ 문제점

- (쉬운 접속환경) 인터넷 환경 변화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중고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음
- (단순게임 인식) 알콜 중독, 약물 중독과 달리 걸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들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 (성인도박 중독) 학생 도박은 방치하는 경우 성인 도박 중독으로 이어져¹⁾ 이혼, 실직, 자살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
- (복합적인 문제야기) 돈내기 게임(도박)을 하는 학생은 성적 저하, 집중력 저하, 불안 및 우울, 친구관계 문제, 가정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식부족) 학생 도박의 위험성·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 교육 저조, 도박사안 발생 시 대응 역량 미흡

III 예방교육 및 상담지원

□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학생교육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게임 속 사행성 요소(게임과 도박의 차이), 도박문제와 예방법 등
- 학교 안전교육(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교육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활용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

〈활용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신청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http://www.kcgp.or.kr>)→예방홍보→예방교육→교육신청
- 예방 교육 문의: 전북센터(☎255-1336)
- 온라인 예방 교육 자료 안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http://www.kcgp.or.kr>)→예방홍보→예방콘텐츠→온라인예방교육콘텐츠
- 도박 문제 상담
- 온라인 상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kcgp.or.kr>)→헬프라인→온라인 상담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36**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

1) 도박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중단 연구 결과, 도박 중독 문제는 성인기까지 계속 나타남 (Winlers,2002), 문제성 도박 및 병적 도박자의 약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했다고 보고함(이민규, 2003)

도박문제 선별 설문지(CAGI)

작성하기 전에 읽어주세요

돈 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카드나 화투, (인형 등) 뽑기, 스포츠 경기 내기, 복권/토토 등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돈내기 게임(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응답내용은 학교나 담임 선생님에게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실시일자	2021 년 월 일	성 별	남 자 <input type="checkbox"/> 여 자 <input type="checkbox"/>
학교유형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학교 외 기관 <input type="checkbox"/>	나 이	만 <input style="width: 4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세
학 년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input type="checkbox"/>		

본 교육 이전에 도박문제 예방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 아래 문항은 **지난 3개월 동안** 자신이 이런 경험들을 겪었는지 겪었다면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해당하는 **보기번호에 체크표시(V)**해 주세요.

문 항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거의 항상 있다
1 돈내기 게임 때문에 단체 활동이나 연습에 빠진 적이 있나요?	①	①	②	③
2 돈내기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긴 적 있나요?	①	①	②	③
3 돈내기 게임을 위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요?	①	①	②	③
4 돈내기 게임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나요?	①	①	②	③
5 전에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내기 게임을 한 적이 있나요?	①	①	②	③
6 돈내기 게임 하는 것을 부모나 가족 또는 선생님에게 숨긴 적이 있나요?	①	①	②	③
7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①	①	②	③
아래 두 문항은 응답 보기가 위와 다릅니다.	없다	1~3회 있다	4~6회 있다	7회 이상 있다
8 밥이나 옷, 영화표 구입 등에 써야 할 용돈을 돈내기 게임에 쓴 적이 있나요?	①	①	②	③
9 돈내기 게임을 위해 남의 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나요?	①	①	②	③

□ 결과 해석

채 점	1번부터 9번까지 점수를 합산
1) 결과 0~1점 (비문제수준) G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박으로 인한 피해나 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 도박 경험이 있다면 여가 목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수준에서 도박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도박을 자주 할 경우 언제든지 도박 관련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조언해야 합니다.
2) 결과 2~5점 (위험수준)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박 경험이 있으며, 경미한 수준에서 중등도 수준의 조절 실패와 그로 인해 심리/사회/경제적 폐해등이 발생한 상태로, 문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태임을 알려줘야 하며 현재 하고 있는 도박을 중단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6점 이상 (문제수준)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각한 수준의 조절 실패와 그로 인한 심리/사회/경제적 폐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로, 도박 중독 위험성이 높은 상태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도박문제 관련 전문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문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문제수준(Red)의 청소년에게는 특성과 해당 점수의 명확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도박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 주고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함을 설명해 줍니다.

※ 문제수준의 특성

1. 문제수준은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심리적 의존이 강합니다.
2. 문제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전, 가족, 학교생활 문제 등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3. 치료가 빠를수록 효과적입니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박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10> 2021학년도 진안중학교 인성교육계획 어울림과 꿈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1 추진 배경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맞게 인성교육의 역할 강화
- 우리 교육과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육성
-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범사회적 노력 필요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 8대 기본 방향」에 따른 인성교육 수립

2 추진 목표

어울림과 꿈이 있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3 추진 방향

- 학생자치회 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 수립
- 학생 눈높이 맞는 자치와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역량함양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학교공동체 활동을 위한 예절과 배려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시행
- 체험학습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시행
-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기반마련

4 주요 운영 내용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 인성역량 강화	▷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인성역량 강화 ▷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민주적 의사결정 지원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 학교자치의 활성화
인성교육 결과평가	▷ 인성교육 추진결과 평가

5 세부 추진 계획

①자기관리역량 ②심미적감성역량 ③의사소통역량 ④갈등관리역량 ⑤공동체역량

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담당	시기	예산 (천원)	평가지표				
					①	②	③	④	⑤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추진과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학부모-교사 소통체계 구축 -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상담	3월 9월	60			√		√
	▷ 진솔위크북을 활용한 '천천히 호흡하기' - 신입생 학교 적응활동 - 학교와 학교생활 안내 및 주간 활동 운영	학년부	3월	500	√	√	√		
학교 인성 역량 강화	추진과제1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인성역량 강화								
	▷ 학년목표를 지향하는 교과융합수업 - 1, 2학년 학년 목표를 중심의 학년별 주제설정 - 교과가 융합하여 학년별 프로젝트 진행	연구	연중	비예산		√	√		√
	▷ 교과융합수업을 통한 계기교육 - 미술, 사회, 역사교과융합수업으로 계기교육	연구	4월	비예산		√	√		√
	▷ 삶의 즐거움을 찾는 '슬로우 리딩' - 슬로우 리딩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방법 개선	연구	연중	800	√	√			
	추진과제2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방과후	3월	1,000	√				√
	▷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 꿈과 끼를 끌어내는 진로교육과정 운영 - 직료역량 계발을 위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자유 학기	연중	4,000	√		√	√	
추진과제3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연간 4시간 교원 연수 실시 - 집합연수, 원격연수 등을 이용한 연수 이수	인성 인권	연중	200						
▷ 연간 1시간 학생 인성교육 실시 - 인성 핵심 역량은 함양하는 인성교육			비예산	√			√		
민주적 의사결정 지원	추진과제1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생활 규정 및 협약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조직, 활동 -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인성 인권	11월	비예산			√	√	√
	추진과제2 학교자치의 활성화								
▷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 학생회 주관 학생회 예산 편성 및 운영 - 학생 중심의 학교행사 기획·운영	인성 인권	연중	205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자체 학부모회 운영 - 학교축제 참여 및 학부모 연수 실시	학부모	10월	600			√	√	√	
인성교육 결과평가	추진과제 인성교육 추진결과 평가 계획								
	▷ 인성교육 추진결과 평가의 날 운영 - 학기말 교육활동 결과 평가의 날 운영 - 의견 수렴 후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	연구	7월, 12월	400			√	√	√

6 교원 연수 계획

※ 인성교육 교직원 연수(연간 4시간) 계획

일시	장소	대상	시간	인성교육 주제	비고
2021.03.17.	회의실	교직원	1	인성교육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2021.05.12.	회의실	교직원	1	학교인성교육계획 안내 및 토론	
2021.09.08.	회의실	교직원	1	인성중심 수업을 위한 사례 나눔	
2021.10.20.	회의실	교직원	1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반성 및 개선점	

7 기대효과

- 가.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길러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역량을 계발할 것이다.
- 다. 학교교육 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인 소통을 확대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라. 인성교육 함양과제를 배우고 익혀서 가정과 사회에서 행동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11> Three Strikes Rule(삼진아웃제) 가르침과 배움이 바로 서는 약속!

1. 추진 근거

-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부 고시 제2019-203호
- 다. 진안중학교 학교생활규정(진안중학교-8924, 2019.12.23.)
- 라. 진안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진안중학교-2177, 2019.4.2.)

2. 추진 방침

- 가. 교육활동 중인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신체적 방해를 예방하여 교육하고 학습할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 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여 교육활동 방해나 수업 제약을 최소화한다.
- 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한다.

3. 교육활동 방해 시 인성인권부의 역할

가. 사안조사 및 학부모 면담

- 1) 1) 학생 사안 진술서, 목격자 진술 확인, 교직원 사실확인서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2) 2) 교원·학생·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나. 학생조치 및 학부모 상담

- 3) 1)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학교생활규정 제34조)
- 4) - 적절한 수준의 학습과제 부여
- 5) -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 6) - 기타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7) 2) 미인정 결과 처리
- 8) - 학업성적관리규정 제7조(출결상황 관리)
- 9) - 수업 시간의 10분 이상을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10)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학교생활규정 제38조)
- 11) -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 12) 4) 학부모 면담(전화상담)
- 13) - 보호자 면담(전화상담)을 통한 상황 조정 및 갈등 중재

4. Three Strikes Rule(삼진아웃제)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조치사항
사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ree Strikes Rule(삼진아웃제) 적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strike one)→해당 학생에게 1차 주의 - 2단계(strike two)→2차 주의 후, 교실 내 특정 공간(키 높이 책상 등)으로 이동시킨다. - 3단계(strike out)→3차 주의 후, 인성인권부실로 인계 ▪관련 교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방해행위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학생을 분리 조치 - 교육 현장(교실 등) 안정화 조치 후, - 방해 학생을 인성인권부로 직접 인계
사안 조사 및 학부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인권부 사안 조사와 처리 ▪사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해 학생 진술서 확보(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수집 - 관련 교원의 사실확인서 확보 - 담임교사, 관련 학생 학부모에게 통지 ▪학부모 면담(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면담(전화상담)을 통한 상황 조정 및 갈등 중재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규정 제3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한 수준의 학습과제 부여 -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 학부모 통보와 상담 - 기타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미인정 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성적관리규정 제7조(출결상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간의 10분 이상을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교과 담당교사의 처리 방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규정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특별교육이수: 6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확정 및 재심 ▪해결 확인, 재발 방지

<12> Smart Phone Diet

‘내가’ 필요할 때 보고 끊을 수 있는 약속!

1. 추진 근거

- 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 나. 진안중학교 학교생활규정

2. 학교생활규정 제30조(전자기 사용) 내용

제30조 【전자기기 사용】

-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주의시키거나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주의를 시키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5일 이내에서 전자기기를 담임교사가 등교 시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3. 내가 만들어가는 ‘스마트폰 다이어트’!

가. 학기별 1회(연 2회)

나. 다이어트 약속 (①②③은 공동약속, ④⑤은 개인약속)

- ① ()교시 쉬는 시간은 스마트폰 대신 친구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 ② 하루에 ()시간 이상은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③ 밤 ()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④
- ⑤

<13> 학교 주변은 Student Safe Zone 등·하교 시 교통안전 예방 지도

2. 1. 교통안전 수칙

- 가. 가. 통학로는 항상 다니던 안전한 길을 이용합니다.
- 나. 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가지 않습니다.
- 다. 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가 멈춘 후 건너갑니다.
- 라. 라. 보행 중일 때는 휴대전화로 게임이나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 마. 마. 차에서 내릴 때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가 지나가는지 확인합니다.
- 바. 바. 주정차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지 않습니다.
- 사. 사. 차도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지 않습니다.
- 아. 아. 놀던 공이나 친구들과 장난 등으로 차길로 뛰어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자. 자. 야간이나 눈·비가 올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습니다.

차.

3. 2. 자전거 안전 수칙

- 가. 가. 자전거를 탈 때는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나. * 도로교통법 제11조 3항
- 다. 나. 자전거의 점검과 조정을 평소에 합니다.(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등)
- 라. 다. 우산, 휴대전화, 이어폰 등은 자전거 운전 시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마. 라. 내리막길에서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습니다.
- 바. 마. 자전거에 두 사람 이상은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만 타야합니다.
- 사. 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주행하며, 도로 중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아. 사.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교문을 지나 도로로 나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합니다.
- 자. 아. 교차로나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 차. 자. 눈·비가 오거나 짙은 안개가 낀 날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 카. 차. 안전거리와 안전속도를 절대 유지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타.

4. 3. 학교 주변은 Student Safe Zone! 교통안전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 가. 초등학교 주변은 School Zone입니다. 우리 중학교도 학교주변에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나. 나. 등·하교 시간에 자가용, 학원차량, 통학택시 등으로 자녀를 학교 안까지 태워주는 경우에 다른 학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교통 혼잡을 가져옵니다.
- 다. 다. 교문 앞 주정차로 인하여 안전운전 시야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 라. 라. 등·하교 시간 학교 정문 앞에서 자녀를 하차시킬 때 교통안전 부탁드립니다.
- 마. 마. 혹시 자녀의 지각이 염려되어 학교 안까지 자동차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지양합니다.
- 바. 바. 급한 마음에 하는 운전은 사고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4> 생명 존중 · 자살 예방 교육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동적이고 판단력이 아직 미흡한 청소년들의 경우 '사고'에 이어 2번째 사망원인에 대두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기는 친구와의 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 가족 관계 갈등 등의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생명존중과 정신건강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세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 상담 치료가 가능한 기관과 자살 징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기 우울증

청소년기 우울증을 보이는 친구들은 흔히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 ▶ 학업성적 저하
- ▶ 자존심 저하와 죄책감
- ▶ 식사, 수면 습관의 변화
- ▶ 항상 슬픈 표정이며,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함
- ▶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극도의 과민성
- ▶ 두통이나 복통 등의 빈번한 호소
- ▶ 이유 없이 조퇴나 결석을 반복함
- ▶ 가출 시도

◎ **가면 우울증** : 스스로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밝게 웃거나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불안하고 무기력하여 우울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우울감이 신체적 증상이나 산만함, 난폭, 짜증, 반항, 무단결석, 비행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청소년 자살의 특징

1. 분명한 동기

부모로부터의 심한 꾸중이나 심리적 거절, 외모 고민, 이성친구와의 헤어짐, 성적 저하, 따돌림, 입시 실패 등 대부분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2. 충동성, 분노

청소년 자살의 경우 예측이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사건이 있을 때, 분노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자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3. 동반자살이나 모방자살

청소년기는 타인의 암시에 영향을 잘 받으며 또래와 동질성을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강할 때입니다. 자신이 흠모하는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들의 자살을 미화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모방자살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4. 문제해결의 방편

현실적인 고민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도움 요청의 신호

청소년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아직 습득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괴로움과 고민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살 예고 징후

자살징후는 언어적, 행동적, 상징적 표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단서에 대해 미리 알고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차리기 - 위험신호

1.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2.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3.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 수면 상태의 변화

정신건강의 위험신호



1.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혹은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던 경우
2. 일기장이나 친구에게 죽음에 관한 내용을 암시
3. 자살에 관한 책을 읽거나 자살 관련 사이트에 가입·활동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
4.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거부하고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거나, 장기결석, 가출 등을 보일 때
5. 갖고 있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6. 유언장을 쓰는 경우
7. 자살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하는 일이 많아질 때
8. “더 이상은 못 하겠어”, “끝내버리고 싶어”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
9. 식사량의 변화 (너무 적게 먹거나 또는 너무 많이 먹는 경우)
10.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11. 침울하거나 괴로워하던 표정을 짓던 사람이 갑자기 평온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

가정에서 대처방법

1. 자살 예고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다.
2. 만약 자살을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 피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준다.
3. 놀라거나 비난하거나 혐오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4. “다 잘 될 거야”와 같이 무책임한 확신을 준다든가,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라는 진부한 소리를 늘어놓지 않는다.
5. 자살 예고 징후를 보인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6.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를 파악한다.
7.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8.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9. 가족 구성원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자녀 칭찬하기(10계명)

-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 일의 진척사항이 여의치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 가끔 스스로를 칭찬하라

자살에 대한 진실과 오해

- 실제로 자살을 행하는 청소년은 자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X)
⇒ 자살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자살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말한다.
- 자살은 아무런 단서나 경고신호 없이 일어난다. (X)
⇒ 자살하려는 사람은 주변사람들에게 여러 단서와 경고를 준다.
- 자살하려는 청소년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X)
⇒ 자살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삶과 죽음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이다.(X)
⇒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오히려 자살위험을 줄인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자살충동이나 위기상태에 대해 표출할 기회를 얻게 되고, 긴장감도 해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사람도 자살하려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개입할 수 있다.
- 자살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
⇒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완전한 해결, 아니면 자살!’이라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다른 해결책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 요청 전화 및 상담소 안내

- ▶ 교내 상담 서비스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에게 문의하기)
- ▶ 진안교육청 Wee센터 (☎ 430-6290~6)
- ▶ 헬프콜 청소년 전화(24시간 전화상담) 1388
- ▶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 ▶ 한국생명의전화 www.lifeline.or.kr/1588-9191

<15>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청소년 성폭력예방의 책임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 있습니다. 성인들이 청소년 성폭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먼저 청소년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청소년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 청소년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 역시 언제든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성폭력·성희롱이란?

-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외에도 청소년에 관한 성희롱이나 성매매 관련 행위, 청소년 이용 및 음란물 제작·반포 등도 포함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간

- 전체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간 : 밤 45.1%
- 청소년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간 : 오후 1시~6시 사이 40% (일상적인 시·공간에서 많이 발생)

성희롱·성폭력 위험성

- 피해자 성별 : 여성 95.4%, 남성 4.1%
- 피해자 연령대 : 생후 4개월 ~ 70대 할머니
- 발생 건수 : 연간 2만 2천 건 (1일 평균 60.4건)
→ 성희롱·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방향

-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 교육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게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정에서의 경계교육

5. '경계'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6. 상대방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내 경계를 무너뜨리고 내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신체적 경계선'과 '심리적인 경계선'이 있으며 만 3세부터 '너'와 '나'라는 기본이 형성되고 내 존재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8.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경계선을 존중받는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9. 부모의 체벌은 관계의 규칙을 깬 것입니다.
10. 내가 '나'이기 위해 필요한 영역의 한계를 알도록 합니다.
11. 경계선이 없거나 침범 당하게 되면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내 존재가치가 소중하다고 느낄 수 없게 됩니다.
12. 모범적인 경계교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상호작용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함께 지키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공동도덕을 잘 지키며 가족이나 또래들과의 공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너무 엄격하거나 허용적이지는 않은 적절한 수준으로 지키도록 한다.)
13.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기본은 규칙에서 시작합니다.
14. 평소 허용할 수 있는 접촉의 범위를 정해주고, 부적절한 접촉 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16> 양성평등교육자료

1. 양성평등교육이란?

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2. 성차이와 성차별

차이란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말로 사람마다 다른 취향과 특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차별이 생겨납니다. 차별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 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제나 격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성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가진 신체적, 정서적 차이를 뜻하는 것이지만 성차별은 그러한 신체적, 정서적 차이를 토대로 평가하여 직업 선택이나 임금 등에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차별이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다른 사람이 저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구분	성 차 이	성 차 별
뜻	남자와 여자는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몸의 일부가 달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것	남자와 여자는 모두 평등한 사람인데 여자라고 해서 남자와 다른 대우를 해주거나, 남자라고 해서 여자와 다른 대우를 해주는 것
예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음. 남자 어른은 여자 어른보다 힘이 세고 빨리 달릴 수 있음. 여자와 남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이 다름. 남자 어른의 목소리는 여자 어른의 목소리보다 대부분 굵음.	남자는 집안의 기동, 여자는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축구는 남자의 경기라고 생각하고, 공기놀이와 고무줄놀이는 여자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요리와 청소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2)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p.61 일부변경

3. 양성평등 관련 온라인 무료 교육

<http://www.kigepe.or.kr/elearning/user/genderequality/GenderEnrolmentList.do>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를 짚어보며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평등한지 또,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7> 흡연예방교육자료

1. 간접 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운동장을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2. 간접 흡연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 ❖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자녀가 어른이 되면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 자녀들과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3. 청소년기 흡연의 영향

- ❖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보다 나쁘다.
 - 청소년기는 키가 1년에 10cm까지 자랄 정도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키 뿐 아니라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흡연은 담배의 유해성분이 세포 깊숙이 침투하여 독성 작용이 더 크며 청소년기의 왕성한 세포분열을 방해하여 성장을 방해합니다.
- ❖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합니다.
 -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 노출량이 많아 중독이 심해져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습니다.
- ❖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습니다.
 -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18.7배나 높습니다.
- ❖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 발달에도 해롭습니다.
 -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의 산소의 공급을 억제하여 뇌에서의 저산소증을 가져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 ❖ 청소년은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해독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합니다.
- ❖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18>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주요골자

-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한다는 것!

1 청탁금지법 추진경과

- 국회 본회의 의결 : 2015. 3. 3.
- 법안 공포 : 2015. 3. 27.
- 청탁금지법 시행 : 2016. 9. 28.

2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
- 선의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

3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4 부정청탁 행위유형(15가지)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한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관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5 부정청탁의 금지

- 이해당사자(A)가 제3자(B)를 통하여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 이해당사자(A)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 제3자(B) : 과태료(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 ☞ 공직자(C) :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해당사자(A)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 이해당사자(A) : 처벌대상에서 제외
 - ☞ 공직자(C) :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6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 ☞ 공직자 등과 배우자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100만원 이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수수금액의 2~5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19> 공교육정상화(선행학습 금지)

1.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 (‘14. 3. 11, 시행 ‘14. 9. 12)

2. 제정 배경

1)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2)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3.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 (법 제8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평가) 금지
- (시행령 제3조) 입학예정 학생 대상
 - 1)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금지,
 - 2)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
- (법 제11조, 제12조)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법 14조)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 및 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의결요구, 재정지원 삭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 부과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및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4.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 2021학년도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 요약

영역	주요내용																	
I. 추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학생평가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방안 마련 ○(적용 시기)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 																	
II.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p>■ 밀집도를 준수하여 학사일정 정상화 및 등교수업 확대</p> <p>① 학사일정 정상화로 신학기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시작, 법정 기준수업일수 준수 - 초·중·고·특수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p>②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p> <p style="text-align: center;">【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1단계</th> <th>1.5단계</th> <th>2단계</th> <th>2.5단계</th> <th>3단계</th> </tr> <tr> <th>생활방역</th> <th colspan="2">지역적 유행 단계</th> <th colspan="2">전국적 유행 단계</th> </tr> </thead> <tbody> <tr> <td>진인중</td> <td>등교수업</td> <td>등교수업</td> <td>등교수업</td> <td>등교수업</td> <td>원격수업 전환</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력적 학사운영) 단계별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감염병 상황, 학교 구성원 의견 등을 고려해 자율탄력적 운영 가능 ※ (예시) 상황 악화 시 분반, 과대학교 오전·오후반 운영 등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학교(급) 내 밀집도 최소화 - 교내 확진자 발생·지역 감염병 상황 악화 등으로 원격 수업 전환 시, 등교수업일 조정 매뉴얼에 따라 방역당국·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p>③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수업일 확보 <p>■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p> <p>① 기본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학생의 중단 없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과 학생 기초학습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연계되는 교육과정 운영 ○(밀집도 최소화) 등교수업 시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 방안 및 출입구, 특별실, 급식실, 복도, 화장실 등 공동이용 장소의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 ○(밀접 접촉 최소화) 등교수업 시 학습 도구 등의 공동 사용을 자제하고, 학생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유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학급 내에서 학생 간 최대 거리를 확보하여 책상을 배치함 *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및 ‘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침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준수 - 모둠활동 운영 시, 감염 우려가 없도록 학생 간 거리를 확보하고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자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위생 교육)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상시 교육 실시 <p>② 수업 시간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별 기초 시간표 운영 준수[등교수업, 원격수업 모두 해당] - 차시별 교과 담당 학급의 학생 관리 및 피드백 실시 - 출결 확인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등교·원격수업 병행시 학년 간 동일시간 교사 겸임 금지 - 순회교사 교과시간 배정 등을 고려하여 시간표 운영 <p>③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재구성) 원격수업 전면전환, 등교·원격수업 병행,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학습상황에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진인중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원격수업 전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진인중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원격수업 전환													

영역	주요내용															
	<p>따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 재구조화, 수업·평가 예시자료 개발 및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탄력적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할 범교과 학습주제 시수 조정 및 원격수업 가능여부 안내 ○ (자유학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등교·원격수업에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활동 내용 및 운영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 ○ (중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원격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종목 및 활동내용 확대, 운영방식의 다양화 등을 추진 - 학년별로 스포츠클럽 요일을 다르게 편성함 <p>④ 창의적 체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교과 및 범교과 학습주제와 연계·통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327 616 1524 1064"> <thead> <tr> <th>구분</th> <th>1 ~ 2.5단계</th> <th>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자율활동</td> <td>• 교내 방송시설 활용, 불가피한 대면 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td> <td>• 수학여행, 수련활동 불가</td> </tr> <tr> <td>동아리활동</td> <td>•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 • 가급적 학교 외 활동 자제,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td> <td>•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td> </tr> <tr> <td>봉사활동</td> <td>•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 봉사활동 권장 시수 자율 조정 추진 ※ 변경된 권장 시수 등 운영 지침 확인</td> <td>•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td> </tr> <tr> <td>진로활동</td> <td>•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td> <td>•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td> </tr> </tbody> </table> <p>⑤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학칙 제10조 ④항에 의거).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 (교내대회)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후 실시 가능 ○ (학생 상담 및 치유) 전문상담(교)사는 상담 수요조사 또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파악하여 상담 지원 	구분	1 ~ 2.5단계	3단계	자율활동	• 교내 방송시설 활용, 불가피한 대면 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수학여행, 수련활동 불가	동아리활동	•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 • 가급적 학교 외 활동 자제,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	•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	봉사활동	•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 봉사활동 권장 시수 자율 조정 추진 ※ 변경된 권장 시수 등 운영 지침 확인	•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	진로활동	•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
구분	1 ~ 2.5단계	3단계														
자율활동	• 교내 방송시설 활용, 불가피한 대면 활동은 학교장 승인 후 추진	• 수학여행, 수련활동 불가														
동아리활동	• 방역지침 준수 후 동아리 활동 • 가급적 학교 외 활동 자제, 외부 강사 출입 시 학교장 승인 및 발열검사 등	• 동아리 활동 전면 원격 전환														
봉사활동	•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 • 봉사활동 권장 시수 자율 조정 추진 ※ 변경된 권장 시수 등 운영 지침 확인	• 외부기관 방문대면 실내활동 금지														
진로활동	• 숙박형 프로그램 자제	• 전면 원격 진로교육 활동														
<p>Ⅲ. 교수학습</p>	<p>① 기본원칙(13쪽)</p> <p>[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수업) 본교는 밀집도 기준 예외 소규모학교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수업 시 토의·토론 등의 소통이나 실험·실습 등의 기자재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비말이나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수업 실시 ○ (방역 강화) 학교 내 이동 수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수업 전후 교실 방역 및 물품 소독 등 관리 철저 <p>[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시, 다양한 원격수업 유형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토의·토론,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실시 <p>② 학생의 흥미와 역량을 제고하는 수업으로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운영 계획 수립) 학교 여건별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다양한 원격수업 운영 방식, 질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 ○ (원격수업-수업 질 제고) 교과목별 성취기준 재구조화로 원격수업 운영으로 학생의 흥미·역량 제고 <p>③ 쌍방향 소통수업 활성화를 통한 학습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 소통 수업)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확대하여, 과제 수행에 대한 개별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효과성 제고 ○ (맞춤형 피드백 제공) 수업 중 형성평가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 참여도·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개인별 피드백 제공 활성화 															

영역	주요내용																						
IV. 출결관리	<p>[등교수업]</p> <p>①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 (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p>※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해당 교과 e학습터를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표 <p style="text-align: center;">【등교중지 대상 학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대상</th> <th style="width: 45%;">등교 중지 기간</th> <th style="width: 30%;">출결증빙 자료</th> </tr> </thead> <tbody> <tr> <td>확진 받은 학생</td> <td>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2호 서식] </td> </tr> <tr> <td>격리 통지 받은 학생</td> <td>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통지서 </td> </tr> <tr> <td rowspan="2">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td> <td>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td> </tr> <tr> <td colspan="2">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학생은 등교 가능 </td> </tr> <tr> <td>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td> <td>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td> </tr> <tr> <td rowspan="2">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td> <td>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td> <td>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사본 등) </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td> <td>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도 처리 </td> </tr> </tbody> </table> <p>○ (대상 학생별 정의)</p> <p>○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p> <p>※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학업성적관리규정 제7조 2항 다에 의거)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p> <p>※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은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와 같음</p> <p>○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p> <p>○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p> <p>-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p> <p>※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결시) 처리함</p> <p>※ 증빙서류 :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p> <p>[원격수업]</p>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사본 등)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도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사본 등)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도 처리 																					

① 기본원칙

-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출결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해당 시간)이 원칙이며,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 ※ 출결 확인 기간(3일, 수업일 기준)은 학교장이 임의 변경 불가
- (출결 기록)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는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 (출결 처리)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출결(마감) 처리 가능
- (실시간 조종례)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 관리와 별도로 운영(NEIS에 반영하지 않음)
 - ※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종례 출결 관리 방법(중등): 조희(중례)는 '결석' 처리 또는 1교시(마지막 교시) 불참자의 '지각(조퇴)' 처리 시에만 결과 처리
- (유의사항)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의 '가정학습 신청 및 해의 체류 학생' 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 불가
 -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분반 포함)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②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 원격수업에는 실시간 쌍방향(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이 포함되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확인·인정,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출결을 확인(인정)하고 기록하되, 필요시 각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함
 - ※ 단, 출석 확인(인정)기간은 학교에서 임의 변경 불가(전국 공통)
-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내 학급방, 출결증빙 자료 등은 해당 학년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학년도 종료 시 일괄 삭제됨(필요 자료 학년도 종료 전 다운로드)
-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수업 유형	출석 확인 방법								
	실시간	e 학습터 활용 방법					기타(대체 확인)		
		교사 확인	학습 시작일	진도율	접속 기록	학습 시간	산출물 탑재	SNS/메시지*	대체 학습
실시간 쌍방향	○	○	○	○	○		○	○	○
콘텐츠 활용		○	○	○	○	○	○		○
과제 수행		○	○	○	○	○	○		○
확인(인정) 기간	당일**	원칙적으로 당일(최종 3일(수업일 기준) 내)							

- e 학습터 진도율 이수기준은 60%이상으로 함

※ '출결 처리'를 위한 이수 기준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미충족 시 '결석(결과)' 처리)

③ 학생 관리

- (대체학습 대상 학생) 학생의 장애,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공한 대체 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해 해당 수업의 출석인정 처리가 불가능함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장기결석서 관리)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V. 학생평가

① 기본원칙

- 등교수업,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 (지필평가) 등교하여 실시, (수행평가) 등교수업 또는 원격수업에서 실시
 - ※ 수업 중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습 수준을 확인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참여도·태도 등을 관찰하여 학생 상담·지도에 적극 활용
-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방법 및 반영비율,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과목별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학교 자율 결정으로 하고, 지필평가 1회 실시 가능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함

영역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 방법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 인정점은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의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② 지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유희교실 활용, 학년별 고사기간, 시험시간 오전/오후 분리 등 탄력적 운영 ○ 지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완화 ○ 지필평가(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시 시험연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학생 귀가 조치 방법, 결시자의 성적처리 등을 평가 시행 전 학생·학부모에게 공지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 필요 ○ 결시생 성적처리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조 2항 따라 산출 ③ 수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 ○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 ○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 방안을 교과별 평가계획 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 ④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생평가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단계)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가능 ○ (3단계)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평가 미실시)하는 PASS제 적용 가능, 중3·고교는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 산출 ※ (지필평가)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 (수행평가) 가급적 원격수업을 활용하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평가 가능 ⑤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VI.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기재)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재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원격수업의 내용 (또는 과제 내용)과 등교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 가능[원격수업(또는 과제) 정성적 내용만을 단독으로 입력 불가, 정량자료 입력은 가능] ○ (기재 내실화)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계획·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 확보

영역	주요내용
	<p>② 운영 방안</p> <p>[사회적 거리두기 1 ~ 2.5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활동) 등교수업, 수행평가 등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 ○ (창의적 체험활동)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등교수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교사 관찰여부와 무관) ※ 교사의 관찰평가를 통한 정성적 기록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수상경력)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내대회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능 ○ (인적·학적·출결) ' 21. 3. 1.부터의 사항을 기재 ○ (전·출입 시) 원격교에서는 학생의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시 학생의 출결상황 및 활동 내용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전출 시 관련 자료를 송부함 <p>[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세특,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 교사가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과 함께, '원격수업 내용' 을 학생부에 기재 가능토록 허용 ○ 수상경력, 인적·학적사항, 등교수업 이전 활동(독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격증, 진로 희망사항 등)에 대한 작성 기준은 1 ~ 2.5단계와 동일 <p>③ 원격수업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I) 수업 중 관찰·확인 가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유형 II) 수업 후 관찰·확인 가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일부 교과만 허용, (2021년) 모든 교과 허용 -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유형 III) 수업 후 관찰·확인 불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에세이, 독후감, PPT, UCC 등 - 단, 등교수업(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유형 IV) 수업 중 관찰·확인 불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실시간 채팅, 문자메시지, 댓글, SNS 메시지 등 - 단, 등교수업(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p>VII. 원격수업 관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수업계획을 수립·관리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함. ○ (구성) 위원장 - 학교장, 부위원장 - 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 교무부장, 연구부장, 평가계, 국어·한문·중국어 교과대표, 영어·수학 교과대표,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대표, 도덕·사회·역사 교과대표, 예체능·보건 교과대표

〈21〉 2021학년도 세입 세출 예산

회계연도 : 2021 예산구분 : 본예산

학 교 명 : 진안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전년예산액		예산액	비교증감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증감률(%)	최종예산	증감률(%)
본예산	349,346	829,372	379,550	32,204	9.3	-449,822	-54.2
세입				세출			
장	관	누계예산	구성비(%)	정책사업	누계예산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323,309	85.1	인적자원 운용	4,440	1.1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18,620	4.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51,088	39.8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7,041	7.1	기본적 교육활동	31,828	8.3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580	0.1	선택적 교육활동	8,700	2.2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0,000	2.6	교육활동 지원	24,492	6.4	
				학교 일반운영	158,502	41.7	
				학교 재무활동	500	0.1	

<22> 진안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중학교 학교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제3조(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부록1>

결 석 계

결 재	담임	교무부장

제 학년 반 번 성명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기에 보호자 연서로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기간	20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구분	결석		
	질병	인정	기타
사유			

2021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진 안 중 학 교 장 귀 하

담임교사 내용 확인

확인 일시	2021년 월 일
확인 방법	가정방문, 전화연락, 학부모 내교, 기타
확인 내용	
붙임서류	

위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담 임 : (인)

※ 첨부물 : 진단서, 진료확인서, 청첩장, 부고장(사망진단서),
기타 증빙 서류()

<부록2>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참가자	학년	반	번	성명	전화	비고

기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시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장소						
인솔보호자	기간	학생과의 관계	성명	전화		
체험학습 주제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친지 방문 및 효도 체험학습 ·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학습 등 					
학습내용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 (인)

신청인 보호자 : (인)

()학교장 귀하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부록3> : 체험학습 종료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 누 가

()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	------

2. 연 제

기 간	2021년 월 일(요일) ~ 2021년 월 일(요일)(일간)
시 간	시 분 ~ 시 분 ※반일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3.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	---

4.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가정의 가게, 돌아가신 분의 얼, 만난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어떻게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생 : (인)

결 재	담 임
	전 결

진안중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기간: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